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 지방자치관련 법령 중심 -

최근 제·개정 법령

입법정책담당관실

【 2013. 3. 18 ~ 2013. 3. 31 】

❖ 자세한 법령정보 : http://www.law.go.kr/ ⇒ 최신법령정보 ⇒ 공포법령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407호, 2013. 3. 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일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42호, 2013.3.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49호, 2013.3.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63호, 2013.3.22)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품질관리교육 이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개선하며, 과징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강화(안 제8조의2)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 등(안 제22조제1항 신설)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관리하도록 함.

다. 품질관리교육 대상에서 품질관리인을 두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 제외(안 제28조제1항)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고 있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교육 의무이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함.

마.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중복제재 해소(안 제48조제1항제5호)

품질관리교육 이수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바. 과징금 부과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51조제1항)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제47조제2항제1호, 제47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탄소 녹색정상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76호, 2013.3.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1.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

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3.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16호, 2013.3.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17호 , 2013.3.23)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3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소관에서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그 2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6호).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외교통일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7호).

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안전행정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

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10호).

아.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1호).

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함(안 제37조제12호).

차.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국토교통위원회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카.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16개로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461호, 2013.3.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 2만명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총정원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462호, 2013.3.23)

1. 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하여 한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 명칭 등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4항 신설)

보좌기관의 명칭을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보임 가능 계급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3조 신설)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중앙행정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다른 정책·사업을 관장하는 기관과 구분함으로써 조직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다. 실 밑에 국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5항 신설)

실 밑에 보조기관으로서 국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 단위에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장급 보조기관의 보임가능 계급 축소(안 제14조제3항)

과 단위 기관 설치·운영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과장급 보조기관의 보임 가능 계급의 범위를 현행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축소 조정함.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한시기구 신설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 설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한시조직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되, 한시조직의 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463호, 2013.3.23)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등 새로 신설되는 기관에 속하는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 위임 등(안 제18조 신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사무에 관한 권한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권한 위임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정부조직개편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소속이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함.

2)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 위임·위탁(안 제32조제11항·제12항 및 제49조제5항·제6항 신설 등)

1)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장 및 집유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각각 위탁함.

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기능 조정(안 제36조제9항)

1)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안전처장으로 이관되고, 그 밖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기준 제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함.

마.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권한 위임·위탁 등(안 제41조의2 및 제55조 신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만건설사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등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